

『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상조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의거 구미시의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 임

3. 주요내용

- 기금 조성 재원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-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기금결산보고서 작성 및 의회의 심의·의결(안 제7조)
-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함(안 제8조)
-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미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1조)임

4. 참고사항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의거 구미시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코자 하는 것임

○ 주요 내용은

-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와 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
-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창작, 보급을 위해 기금을 운용·관리 토록 하였으며
- 또한 기금의 존치기한을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고, 효율적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8인 이내의 구미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미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·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관련 규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나, 기금조성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.